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3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0.

발 의 자: 김수흥·김주영·최인호

김교흥 • 기동민 • 이명수

김민석 · 안규백 · 강득구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%에 불과한 수도권에 50.1%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,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·금융·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,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의2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	제63조의2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
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	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
면 등)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	면 등) ①
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	
여 <u>2022년 12월 31일</u> (본사를	<u>2027년 12월 31일</u>
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	
지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보	<u>2027년 12월 31일</u>
유하고 <u>2022년 12월 31일</u> 이 속	2 <u>027년 12월 31일</u>
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	
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	
는 경우에는 <u>2025년 12월 31</u>	<u>2030년 12월 31</u>
<u>일</u>)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	일
(이하 이 조에서 "본사이전법	
인"이라 한다)은 제2호에 따른	
감면대상소득(이전 후 합병·	
분할 •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	
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	
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	
생한 소득은 제외한다)에 대하	
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	
세를 감면한다. 다만,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부동산업, 건설업,	
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	

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